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2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이병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
박 석, 박칠성, 박환희,
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
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
이종환, 임규호, 장태용,
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4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, 청년·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업장소 지정 범위와 영업허가과정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를 마련하고 있음
- 전통시장의 유희부지 상태인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내 ‘부설주차장’을 추가
- 현재 전통시장 내 부설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내용을 개정하여, 관련 법령의 요건과 지역적 사정에 따라 영업여부를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,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시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전통시장, 상권활성화 구역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도 가능하게 함(안 제2조제1항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주차장법, 주차장법 시행령,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,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,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이를 위한 「주차장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영업장소) ①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“이라 한다)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“음식판매자동차 영업“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(이하 ‘시설·장소’라 한다)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「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</u>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영업장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 제2조에 따른 <u>전통시장,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이를 위한 「주차장법」</u> 제2조에 해당하는 <u>부설 주차장</u>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